

(제3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제2호나목은 각각의 지급제한기준에 따른다.

나.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지급제한 기준	선정 제한기간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	영 제41조 제1항제1호		3년
1)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		경 관보 전 직 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	
2)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		경 관보 전 직 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	
나.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영 제41조 제1항제2호		-
1)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	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불금 전부 미지급	
2)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	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협약을 일부 이	

다.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	영 제41조 제1항제3호	행하지 않은 면적에 비례하여 미지급하되,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면적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전부를 지급한다.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-
---	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